세상을 아름답게, 평생건강 With YOU!
평생건강, 국민행복,
글로벌 건강보장 리더

- 장기요양기관용 -

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전산 매뉴얼

2024. 8.

h·well
국민건강보험 요양기준실

Ⅰ 개요

□ 목적

○ 기존 문서보고 형식의 감염병 보고체계(지사-지역본부-본부)를 기관에서 직접 전산 등록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 전산화·간소화 도모

□ 화면구성 및 위치

○ 발생내역 신고 조회 및 등록

○ (화면위치)

◈ 경로

: 장기요양정보시스템 > 요양자원 > 장기요양기관 관리 >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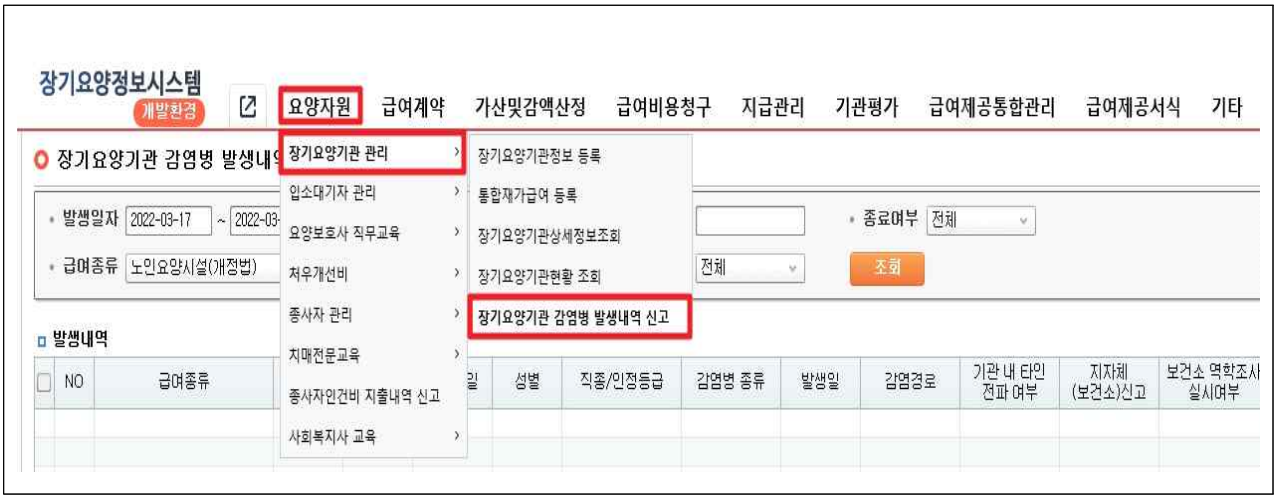

○ (주요내용)

❖ 감염병 발생시 신고 방법

- (변경 전) 기관 → 운영센터 유선 또는 문서보고
- (변경 후)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 보고(발생일 보고)

❖ 감염병 발생 신고조회 및 등록

- (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조회) 기존 발생 신고한 이력 조회
- (감염병 발생내역 등록·전송) 기관정보·감염환자정보·발생내용·경과보고 등록 후 공단으로 입력 정보 전송

Ⅱ 전산프로그램

1. 입력방법 및 화면설명

◈ 경로

: 장기요양정보시스템 > 요양자원 > 장기요양기관 관리 >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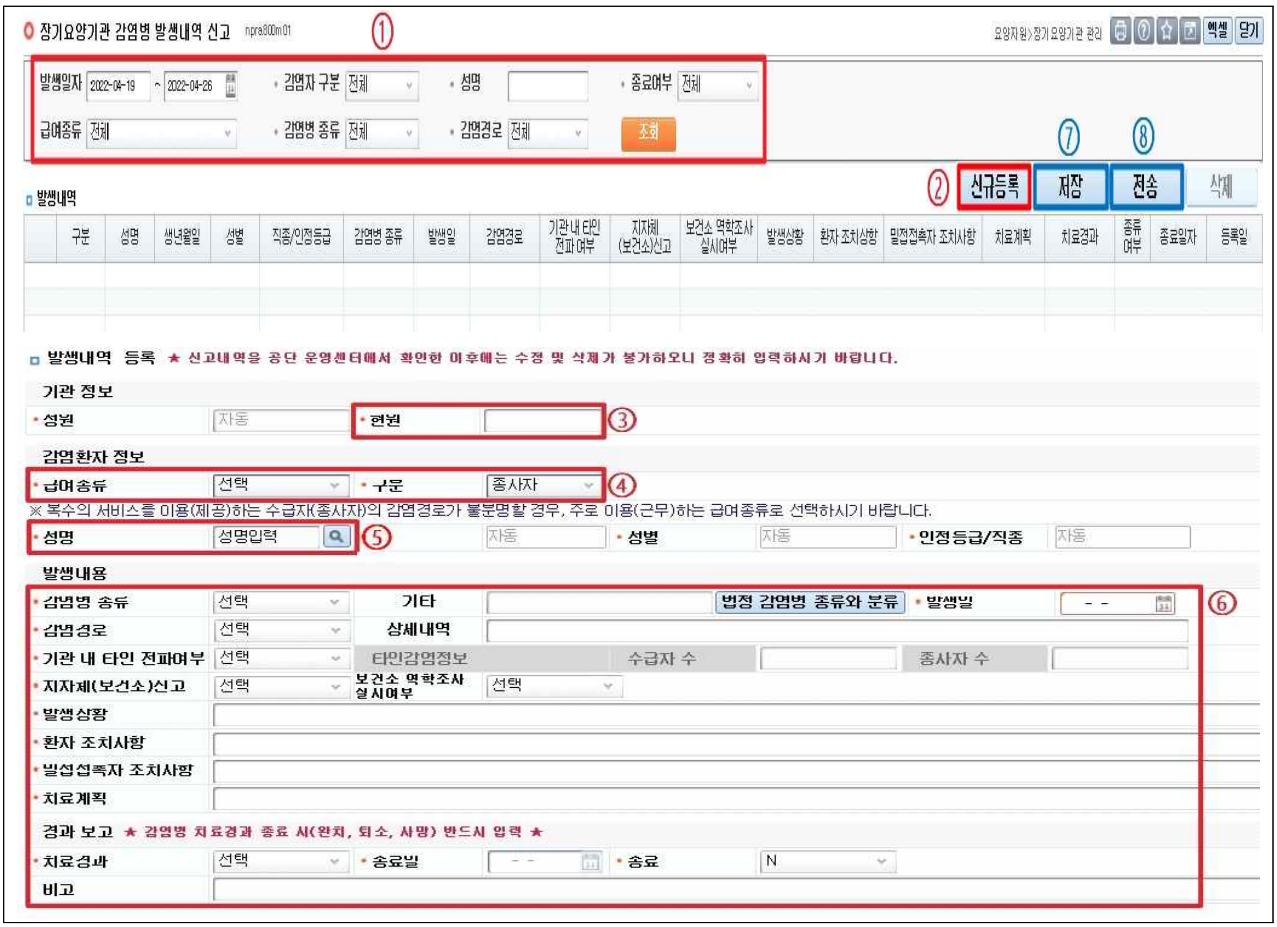

❶ 발생일자 기간 설정 후 조회 클릭 시 기존 신고 이력조회 가능

❷ 신규등록 버튼 클릭

❸ 해당 급여 종류의 수급자 현원 입력

❹ 감염병이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종류, 수급자/종사자 구분 선택

◈ (참고) 복수의 서비스를 이용(제공)하는 수급자(종사자)의 경우, 주로 이용(근무)하는 급여종류로 선택

❺ 🔍를 클릭해 감염된 수급자, 종사자를 찾아 반영

(생년월일, 성별, 인정등급/직종 자동반영)

◈ (참고) 다수의 감염자 발생 시 개인별로 각각 입력

❻

항목	세부내용
㉠ 감염병 종류	옴, 결핵, A형간염, B형간염, C형간염, VRE, CRE, 코로나, 기타 * '기타' 선택시 감염병 종류 수기 입력 필요
㉡ 발생일	감염병 발생일자 등록
㉢ 감염경로 / 상세내역	기관 내/ 타 장기요양기관/ 병원(요양병원 등)/ 자택, 그 외 기관(양로시설 등), 확인불가 * 감염경로에 따른 상세내역 입력
㉣ 기관 내 타인 전파여부	전파여부 Y, N 입력 * 타인 감염 있을 시(Y 선택) 타인감염정보 입력(필수)
㉤ 지자체(보건소) 신고 / 보건소 역학조사 실시여부	신고·실시여부 Y, N 입력
㉥ 발생상황	구체적인 감염상황 기재
㉦ 환자 조치사항	환자 발생에 대한 기관의 조치사항 기재
㉧ 밀접접촉자 조치사항	감염자 외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·검사·방역 등 조치사항 기재
㉨ 치료계획	병원진료 및 약물관리 등 치료계획
㉩ 경과보고	감염병 치료경과 종료 시 입력(완치, 퇴소, 사망) -치료경과: 등록 시점의 감염자의 치료경과 -종료일: 감염자의 완치, 퇴소, 사망인 경우 종료일 입력 -종료: 감염자 종료 여부에 따라 Y, N 선택 -비고: 감염자 특수관리 등 여부 명시

❼ 입력내용 확인후 **저장**

◈ (참고) 입력내용은 전송 전에만 수정/삭제 가능

❽ 감염병 신고 내용 공단으로 **전송**

◈ (참고) **치료경과 변동 시 경과보고 내역 수정하여** **저장** → **전송**

(예: 감염병 완치 시 치료경과 완치로 변경 후 종료일, 종료여부 입력)

2. 공단으로 전송 이후 착오 입력 신고건 발생 시

○ 공단(운영센터)에 유선·내방·방문 등으로 수정요청

착오입력 항목	세부절차	
발생내용	착오 신고(유선·방문·내방) → (공단) 기관신고 반려 처리 → (기관) 내용 수정 → 입력내용 확인 후 저장, 전송	
감염환자 정보 등	공단 결재 전	공단에서 반려 후 → 기관에서 해당 감염자 자체 수정·삭제가능
	공단 결재 후	반려 처리 및 삭제 불가 → 공단에서 발생내역 직권수정 1회 가능

[장기요양기관]

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보고 Q&A

Q1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해야 하나요?

❍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기관, 단기보호 기관에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.

Q2 기관의 착오 입력 시 수정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❍ 운영센터에 유선, 방문, 내방으로 수정요청이 가능합니다.

❍ 운영센터에서 사후 상담 입력 전 또는 사후상담 입력 후 연동결재를 득하기 전 기관신고 반려 처리를 해주었을 때는 기관 포털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기관포털에서 수정이 불가합니다.

Q3 동일 대표자가 복수의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복수의 기관에서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?

❍ 아닙니다. 한 기관에서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.

Q4 타인감염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?

❍ 현재 계약 중인 수급자(외출·외박 포함)와 근무 중인 종사자 중에서 최초 감염자로부터 전염되어 발생한 감염자의 수를 산정합니다.

※ 사후 상담 입력 전 입소자의 퇴소·사망 및 종사자의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, 신고 된 타인감염자 수와 상담 중 확인된 타인감염자의 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Q5 수급자가 결핵에 감염된 것을 퇴소 후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. 이 수급자도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?

❍ 아닙니다. 신고일(전산 입력일) 기준으로 계약 중인 수급자나 근무 중인 종사자만 신고 대상에 해당되므로 퇴소한 수급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Q6 옴에 걸린 수급자가 완치가 되었습니다. 완치된 것을 전산으로 보고 해야 되나요?

❍ 기존에 신고하셨던 내역 중 경과보고 항목은 수정이 가능하므로 치료경과를 '치료중'에서 '완치'로 변경하고, 종료일 입력 및 종료 여부를 'Y'로 변경 후 저장 → 전송 해주시면 됩니다.

Q7 코로나19는 「코로나19 일일 상황등록」과 감염병 발생 보고 전산 화면 중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?

❍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법정감염병(4급)으로 분류되어,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화면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. 기존 코로나19 일일 상황등록 및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결과등록 화면은 비활성화 예정입니다.